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35 총회회관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산을 소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

- 본 재단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리
- 학생 육성 및 봉사 사업
- 기독교 선교 활동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립 유지 경영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15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여성 1인 이상 포함)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의 반수 임기는 전항의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 총회를 거쳐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상임이사 선임)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제1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4.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총회 및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

제1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 이외의 사무 처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6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조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 18조 (이사회 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 기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 19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본 정관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항에 대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4장 자산과 회계

제20조 (자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2종으로 나눈다. 기본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연도말 보고 목록)과 같다.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경비의 유지 방법)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이에 충당한다.

제23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 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서 상환되는 차입금은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6조 (설치)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직무)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익년도 사업 계획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33조 (개정 및 시행)

1.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2. (정관 효력)

본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명단 및 임기는 생략)

1966년 9월	제51회	총회	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94년 9월	제79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유지 관리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의하여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회)

본 세칙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와 각 지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회 재산)

본 세칙에서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및 그 부지 또는 교회가 소유하는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노회 재산 관리자는 아래와 같다.

1. 총회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본 법인이 지정한다.
2. 각 노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노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3. 각 교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해당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4. 기타 교회 소속 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단체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등록)

1.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이 (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6조 (절차)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 양식) 1부

2. 당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회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제7조 (수속비용)

전조의 등록 비용은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제8조 (기본재산 처리)

1. 본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총회 및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총회 재산 : 총회의 보유재산
 - ② 등록 재산 : 교회 등의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한 재산
2. 총회 재산의 처분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등록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 본 법인은 처분 타당성을 살펴 재석 이사 3분의 2 찬성과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처분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 및 공동회의록과 노회동의서
3. 처분 계획서
4.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제10조 (기채승인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에 등록된 총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사유를 명시)
2. 소속 기관 회의록(당회, 제직회)
3. 재산의 등기부등본(대지 및 건물)
4. 금융기관의 확인서
5. 대출금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서

제11조 (보고)

각 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증감 이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본 법인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조 (임원 선정)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1. 총회 공천 이사 10인 단, 유지재단에 재산이 등록된 자여야 한다.
2. 이사회가 추천한 2인
3. 총회 총무 1인
4. 선교사 이사 2인

제 13조 (사무국)

사무국은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 14조 (직원)

1. 사무국에는 업무에 따라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3. 부장과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 15조 (서면 결의)

이사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이사가 정식 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 (비용부담)

본 유지재단이나 당시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관련 각 소송의 비용을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 17조

본 시행세칙은 본 법인이사회 의결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실시한다.

제 18 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장학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지도자 양성과 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장학 기금을 보존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관리)

장학 기금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관리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다음 장학금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적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교역자 자녀 장학금
2. 한신대학생 장학금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4. 해외 유학 장학금

제4조 (자격)

1. 교역자 자녀 장학금

교역자 자녀 가운데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역자라 함은 은퇴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 재학생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는 한신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격에 관한 규정은 한신대학이 작성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교육자나 일반 교인으로서 교회 선교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해외유학 장학금

해외유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학 후 귀국하여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외유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기관 혹은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학업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5조 (장학 금액)

장학 금액은 총회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선발 절차)

1. 교역자 자녀 장학금

- 1) 노회는 교역자 자녀 장학금의 할당을 받는다.
- 2) 청원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 노회에서 접수하고 노회는 7월 15일까지 적격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 3) 총회 본부는 총회에서 선발된 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장학금을 매학기 본인에게 직송한다. 1학기 장학금은 2월 말에, 2학기 장학금은 8월 말에 송금한다.
- 4) 장학생과 추천 목사는 각기 성적표와 의견서 2통을 노회 장학위원회에 매 학기 제출하고 그중 1통은 총회 본부에 송부케 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교 교수회는 신학생 장학금을 받을 적격 후보자를 선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지도자 교육 장학금 청원서 접수와 선발 결정은 본 이사회가 직접 관리한다.

4. 해외 유학 장학금

해외 유학 장학생의 선발 의뢰가 있을 때 본 이사회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관계 교회나 단체에 추천한다.

제7조 (기한 및 기타)

- 1. 해외 유학 장학금 외의 각종 장학금의 액수와 인원수는 총회가 정한다.
-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3. 총회 본부는 총회에 매년 장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 4.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준한다.
- 5. 본 세칙의 개정은 총회 규칙 개정에 따른다.

1963년 제4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선교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 교단의 선교 정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업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타 지원 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방법)

선교 기금의 사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본 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총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기금의 일부를 총회 선교 사업을 위해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 단, 기금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 내용에 의한다.
3. 본 기금의 이익금 및 기금의 일부 대여 사용은 선교위원회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해 사용토록 한다.

제3조 (관리)

선교 기금의 관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선교 기금은 특별 회계로 하며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금 적립 방법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정한다.
3. 유가증권 표기 명의를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이사장과 총회 총무로 한다.
4. 기금 상황을 연 1차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대여금)

대여금 총액의 한도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조 (대여기간)

기금의 대여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여 의무를 이행 완료 시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3년간의 대여 기간을 완료하였을 때는 대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금 한도)

대여 한도액은 1 교회당 일금 3,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이율과 취소)

1. 대여이율

대여이율은 대출받은 날부터 3년간 연 2%로 한다.

2. 대여의 취소

대출 결정을 한 후 서류 구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회가 대출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그 대출을 취소한다.

제8조 (담보)

담보물의 제공은 부동산(교회당 또는 단체 명의의 재산 제외)의 근저당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 결의에 의해 노회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대여교회 선정)

1. 총회본부는 총회 회보에 신청교회를 공고하고, 선교기금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본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2. 접수된 서류는 총회 선교위원회가 심의,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대여 대상 선정기준)

1. 노회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취약 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본 교단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4. 개척교회로서 교회당 건축부지 및 신축 자금에 한해서만 대여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 (위약)

대여를 받은 교회가 상환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치 않을 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위약금을 납부하되 원금의 10%를 내야 한다.
2. 상환기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환치 않는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교회들에게는 선교기금 대여 선정교회에서 제외한다.
3. 상환기일을 3년 이상 경과할 시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채무를

총회 상회비에 포함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통합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